
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
무형유산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
협력사업 모델 발굴 연구용역
과 업 지 시 서

2020. 8.

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

- 목 차 -

I. 과업의 개요	1
1. 과업명	1
2. 배경 및 필요성	1
3. 목적	1
4. 과업 내용	1
5. 과업 기간 및 예산	2
II. 과업수행 일반사항	3
1. 일반사항	3
2. 과업 추진 방법	3
3. 자문위원회 운영	5
4. 과업 변경 조건	5
5. 과업 해지 조건	6
6. 과업 보고	6
III. 과업수행 세부내용	7
1. 과제 1.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대상 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..	7
2. 과제 2.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(ICHCAP)형 협력사업 모델 발굴 ..	7
IV. 성과품 납품 및 기타사항	9
1. 납품자료 제출 목록	9
2. 기타사항	9

1. 과업명 : 무형유산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 협력사업 모델 발굴 연구용역

2. 배경 및 필요성

- 새로운 국제개발협력목표(Post-MDGs)를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 진행
 - 2015년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(이하 SDGs) 중 4번과 11번의 세부목표로 문화가 포함되어,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문화의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음
-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무형유산의 기여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회원국의 보호조치로 이어지는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
-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수요 증가 등 문화소비 추세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
- 또한, 코로나19 이후 △문화·예술 소비 감소, △공연·전시 연기 및 취소 등으로 인해 예술인 피해 및 생계유지 문제가 발생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필요성 대두
- 이에 따라,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무형유산 지속가능발전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

3. 목적

-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대상 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
-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(ICHCAP)형 협력사업 모델 발굴

4. 과업내용

- 과제 1.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대상 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
- 과제 2.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(ICHCAP)형 협력사업 모델 발굴 및 성과 관리 방안 수립

5.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

- 과업기간: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소요예산: 금40,000,000원(금사천만원), 부가세 포함

1. 일반사항

-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, 착수 시 과업 참여자 명단, 과업 진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, 과업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협력 및 문화 분야 전문가 혹은 연구참여 경험자를 참여토록 한다. 단, 퇴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(이하 센터)의 사전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.
- 센터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,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최신 자료를 충분히 조사 활용하며,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.
- 최종산출물은 A4 100매 이상(12 포인트, 자간 160) 작성하여야 한다.

2. 과업 추진 방법

- [관계법규 준수]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분지침서,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[과업진행 보고]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또한, 과업의 주요내용,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관하여 본 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센터와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.

- **[협의사항]**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,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,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. 또한,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**[의견수렴]**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센터가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반영토록 하며,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센터의 의견에 따르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**[성과물 등 제출]**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센터의 요구(설명 또는 자료제출)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**[연구팀 구성]** 과업추진을 위한 연구팀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.
 - 연구자(최소 3인)
 - 책임연구자 : 국제협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, 아시아태평양 지역 혹은 문화분야 연구 경험자
 - 보조연구자(1) : 국제협력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
 - 보조연구자(2) : 국내외 문화 분야 종사자 혹은 유관 분야 연구 경험자
 - 센터 관계자(총 3명)
 - 박성용, 정책개발실장
 - 박규리, 정책개발실 사업개발팀장
 - 김인애, 정책개발실원
- **[연구팀 역할분담]** 과업추진을 위한 역할을 아래와 같이 분담하며,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.
 - 연구자(※ 연구과제 수행자)
 - 문헌자료 검토
 - 유관부처 및 이해관계자 면담(화상, 유선, 서면 포함)

- 면담자 명단 및 회의록 작성
- 센터 의견 수렴·반영
- 연구 중간·최종 보고서 제출(국·영문 요약본 포함)
- 센터
 - 사전협의 및 중간·완료보고회의 개최 및 운영
 - (필요시) 연구 관련 내부 자료 중 공개 가능한 범위 내 제공 및 설명
 - 연구사업 참여 및 실무 의견 개진

3. 자문위원회 운영

-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연구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·심의할 수 있다.
- 자문위원회 구성 시 위원 선정은 센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4. 과업 변경 조건

- 상위계획 및 센터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에는 센터와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범위,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-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,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와 별도 협의 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센터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○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-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센터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

5. 과업 해지 조건

○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.

- 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
-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,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

○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.

○ 과업수행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가능하다.

6. 과업 보고

○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.

※ 단, 하기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 혹은 대안으로 같음 가능

- 착수보고회 :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(과업수행계획서 등)
- 수시 보고 : 센터의 요청사항, 필요사항 등에 대한 보고
- 중간보고회 :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행
- 최종보고회 : 용역 종료 7일 이전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

Ⅲ

과업수행 세부내용

□ 과제 1.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대상 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

1.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사업발굴 타당성 분석

-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주요 국가발전정책 분석
-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문제/수요 분석 및 지속가능한 해결방안 도출

2.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사업추진여건 분석

-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현황, 산업, 이해관계자 등 추진여건 분석
-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타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 협력 현황 분석

□ 과제 2.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(ICHCAP)형 협력사업 모델 발굴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

1.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정책과 수요를 반영한 ICHCAP형 협력사업 모델 발굴

- 협력대상국 추진여건 분석을 기반으로 협력사업 모델 발굴
-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점검 및 차별화된 사업 모델 발굴

2. 협력사업 모델 추진체계 구성

- 협력사업 추진체계(목적, 범위, 분담 및 책임사항, 예산, 일정, 위험 관리 방안, 지속가능계획 등) 수립
- 협력사업 주요 이해관계자 및 협의체 도출
- 국·영문 Project Design Matrix(PDM) 구성
- 협력대상국 및 ICHCAP 간 사업계획서 작성 협력체계 혹은 조정 위원회(Steering Committee) 구성 방안 수립

3. 협력사업 모델 성과관리 방안 수립

- 협력사업 모델 주요 성과지표 설정
- 사업 적절성(Relevance), 효율성(Effectiveness), 효과성(Efficiency), 영향력(Impact), 지속가능성(Sustainability), 일관성(Coherence) 지표 설정
- 정기 점검 및 평가(Monitoring & Evaluation) 방안 수립

4. 기타 센터가 요청하는 사항

- 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이상 개최
- 센터 실무진 의견 반영

1. 납품자료 제출 목록

구분	규격	수량	제출일정
착수계(예산산출내역서, 사업수행계획서, 인력투입계획서 등 포함)	A4	1부	· 계약체결 후 3일 이내
중간보고서	A4	15부	· 중간보고 후 7일 이내
최종보고서	A4	15부	· 사업완료 시까지 (사업설명 PPT 포함)
기타 보고자료(회의록 일체 및 자문결과 포함)	A4		
관련 자료 및 USB	-	2식	
완료계(완료보고서 및 정산자료 포함)	A4	1부	· 사업완료 후 7일 이내

2. 기타사항

- [신의성실원칙]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센터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한다. 또한, 동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센터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.
- [과업수행자 변경통지] 과업수행자는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의 변경이 있을 시 신속히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[성과물 수정·보완]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이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센터의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·보완하여야 하며, 본 과업 완료 이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[지적재산권 양도] 과업수행자는 지적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- 과업수행자는 본 연구용역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(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)을 센터에 양도한다.
 - 센터는 위의 저작물을 수정 및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, 과업수행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.
 -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,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인하여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- 센터가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- **[분쟁조정]** 과업수행 중 센터와 과업수행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.
- **[비밀준수 및 보안관리]**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,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.
- **[개인정보보호]**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하며,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 역시 금한다. 과업수행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전적인 배상 책임을 가진다. 과업수행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. 아울러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센터는 동법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끝.